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극복을 위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추진

- 기획재정부. 2020. 3

● '20.3.17.(화)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「조세특례 제한법」 개정안이 '20.3.23.(월)에 공포·시행되었습니다.

〈 코로나19 관련「조특법」 개정 주요내용 〉

-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・법인세 30~60% 감면
- ② 소규모 개인사업자(연매출(VAT 제외) 8.000만 원 이하)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
- **③**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(3.000→4.800만 원)
-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% 세액공제
- **⑤** '20.3.1.~6.30.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% 한시 인하
- **6** '20.3~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
-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
- 기획재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「조세특례제한법」과 「농어촌특 별세법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('20.3.23.~3.30.), 차관회의·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'20.4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.
- 금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,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~60% 감면 관련
- 감면 적용배제 업종을 부동산임대·공급업, 사행시설 관리·운영업, 전문직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
-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*도 비과세(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)
 - * 소득、법인세 감면시 감면세액의 20%를 농특세 과세 → 농어촌 지원 재원으로 활용
- ** '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(5~30%)'에 대해서도 현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중

-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% 세액공제 관련
-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'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

참고 -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- (1)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
- 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,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의 요건(조특령 § 96조의3①~③)

〈 법 개정내용(§ 96의3①) 〉

◇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부동산임대사업자가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적용

현 행	개 정 안			
〈신 설〉	□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및 상가건물의			
	범위			
	ㅇ (부동산임대사업자)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			
	사업자			
	○ (상가건물) ①상가임대차보호법(§ 2)상 상가건물,			
	②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*			
	*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14호나목2)			
	ㅇ (임차인 자격)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§ 2)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			
	건을 모두 갖춘 자			
	- ① 동일 상가건물을 '20.1.31.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			
	- ②사행성·소비성 업종 등*을 영위하지 않는 자			
	* 별표14에 규정			
	-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(국세기본법 § 2 20호)이 아닌 자			
	-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			

②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(조특령 § 96의3④)

─ 〈 법 개정내용(§ 96의3①) 〉

◇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**의 50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

2020 · 04 · 01 www.taxpark.com 17

현	행	개 정 안
〈신 /	설〉	□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* 인하액 계산방법 : ① - ②
		*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
		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*에 따라 계산
		한 '20년 상반기 임대료
		* '20.1.1~6.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
		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
		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'20년 상반기 임
		대료

③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(조특령 § 96의3⑤)

----- 〈 법 개정내용(§ 96의3②) *〉* ---

◇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**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**세액공제 적용 배제**

현 행	개 정 안		
〈신 설〉	□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		
	① ('20.1.31.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) 20.2.1~12.31. 중 보증금·임대료를 기존 임		
	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		
	② ('20.2.1. 이후 계약 갱신시) 20.2.1~12.31 중 보증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		
	따른 금액보다 5% 초과*하여 인상한 경우		
	* 「상가임대차보호법」상 임대료 증액 상한		

④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등(조특령 § 96의3⑥)

---- 〈 법 개정내용(§ 96의3③) 〉

◇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**하여야 함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
	ㅇ (공제신청)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
	ㅇ (제출서류) 신청시 제출서류
	- '20.1.31.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
	- 확약서 ·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- 세금계산서.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
	-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
	받은 서류

⑤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(조특령 § 96의3⑦)

현 행			개 정 안		
〈신 설〉	□ 임대료·보증금 증	·액제한 요건을 9	위반한 법인에 대	한 수정신고 특례]
	ㅇ (대상법인) '20.	1.1.이 속하는 시	업연도가 '20.12.	31. 전에 종료하	는 법인*
	* 사업연도 종	료 후 3개월 내어	∥ 과세표준 확정선	신고를 하여야 함	
		〈 사업연도 -	종료시기별 확정신	· - 기한 〉	
	사업연도 종료	'20.3.31.	'20.6.30.	'20.9.30.	'20.12.31.
	확정신고 기한	'20.6.30.	'20.9.30.	'20.12.31.	'21.3.31
	ㅇ (요건) 임대료·노	보증금 증액제한 모	요건*을 위반한	경우	
	* '20.12.31.	기전에 임대료 인	하 직전의 임대치	 계약보다 임대료	·보증금을 인상(갱
	신 시 5% 결	초과 인상)하는 경	l우 세액공제 적 <i>된</i>	· 배제	
	ㅇ (수정신고 특례) 임대료 등 증여	액제한 요건을 우	l반하여 '21.3.31	.까지 수정신고한
	경우 해당 내용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				
	※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당초 확정신				
	고가 과소신고	L한 것이 되어 교	마소신고 가산세(1	0%) 등이 부과되	티나, '21.3.31까지
	수정신고한 경	우 가산세 부과	제외		

⑥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(조특령 별표14)

	현 항	!	개 정 안				
Ī	〈신 설	>	□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				
١			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				
			업종분류 업종				
			제조업	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			
١			세도됩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			
١			정보통신업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		
			금융 및 보험업	금융 및 보험업 (단,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)			
		부동산업 (단, 부동산관리업 및 투 액공제 적용)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	부동산업 (단,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 액공제 적용)			
			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		
١			교육서비스업 초ㆍ중ㆍ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				
		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	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		
				협회 및 단체			

 $2020 \cdot 04 \cdot 01$ www.taxpark.com 19

〈신 설〉	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			
	○ 개별소비세법(§ 1④	개별소비세법(§ 1④)상 과세유흥장소			

(2-1)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(조특령 §99의10)

〈 법 개정내용(§ 99의11) 〉

- ◇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*에 대해 소기업 60%, 중기업 30% 소득세·법인세 감면
 - * 「조특법」상 중소기업은 유흥주점업, 관광숙박업 외 호텔 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
 - ㅇ 감면배제 업종, 소기업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현 행	개 정 안			
〈신설〉	□ 감면배제 업종 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③ 변호사업、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④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⑤ 금융 및 보험업(보험모집인은 제외)			
	□ (소기업 기준*)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나인 기업 *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와 동일하며, 업종별 매출액 10~120억 원			

(2-2)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(농어 촌특별세법 시행령 §4)

현 행	개 정 안
□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	□ 비과세 대상 추가
ㅇ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	
ㅇ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	이 (좌 동)
등	
〈추 가〉	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

(3)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요건 신설 등(조특령 §104의21)

〈 법 개정내용(§ 104의24) 〉

- ◇ 해외사업장 폐쇄·축소(생산량 50% 이상 감축) 후 국내 사업장 신설 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유턴기업 세제지원
- ㅇ 감면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, 소득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현 행	개 정 안
〈신설〉	□ 증설의 범위 ○ (공장) 공장의 연면적 증가 ○ (공장 외의 사업장)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□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
	증설된 부분의 발생소득 ×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(최대 1) 증설된 부분의 매출액
	□ 구분경리를 통해 "증설한 부분"과 "증설 전 부분"을 구분

(4) 소규모 개인나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(조특령 §110의4 신설)

〈 법 개정내용(§ 108의4신설) 〉

- ◇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('20년 말까지)
- o (대상)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
- ① 과세기간(6개월) **공급기액**(부가가치세 제외)의 **합계액**이 4천만원 이하
-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(감면배제 사업)은 제외
- (감면세액) 일반과세 방식 세액(A) 간이과세 방식 세액(B)
 - (A) [매출세액 매입세액] <u>각종 공제</u>세액(대통령령으로 위임)
 - (B) **공급대기의 합계액**(영세율 공급분 제외) × **업종별 부기가치율*** × **10%**
 - *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(5~30%)
- (기타)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, 신청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(감면배제 사업) 부동산임대·매매업, 유흥주점업 *
	*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
	*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

2020 · 04 · 01 www.taxpark.com 21

- 〈신 설〉 □ (일반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공제세액의 범위)
 - ㅇ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, 전자신고 공제세액,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 감세액.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
 - □ (간이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업종별 부가가치율)

업 종	부가가치율
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	5%
2. 소매업, 도매업, 음식점업	10%
3. 농림어업, 제조업, 숙박업, 운수업, 정보통신업	20%
4. 건설업, 그 밖의 서비스업, 기타 업종	30%

- □ (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)
- ㅇ 예정신고(3개월)를 한 경우 예정신고 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기간(6개월) 기준* 으로 감면세액을 계산
 - * 예정신고(3개월)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나머지 3개월분만을 신고·납부하는 점 감안
- ㅇ 감면배제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(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)하여 감면 적용

감면세액 =
$$(A \times \frac{B}{C})$$
 - D

- A: 「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
- B: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
- C : 공급가액의 합계액
- D: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의 합계액
- ㅇ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방식 세액 산출시 사업종류별로 구분*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*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(5~30%)한 점 감안
- □ (신청절차)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 무서장에게 제출

(5)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(조특령 §110의5 신설)

〈 법 개정내용(§ 108의5신설) 〉

◇ 간이과세자에 대한 **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**(연매출 3.000만원)**을 4.800만원으로 한시 상**| 향('20년 말까지)

- 다만, **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*은 적용 제외**
 - *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업종과 동일
- ⇒ 납부의무 면제세액의 세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□ 감면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(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)하여 계산
	납부의무 면제세액 = $A \times \frac{B}{C}$ $A: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$

(6) 노후차 교체 지원 신차 구입요건 완화(조특령 §111)

현 행	개 정 안
□ 노후차 교체 지원	□ 신차 구입 요건 완화
ㅇ (요건)	ㅇ (좌 동)
- 노후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	
구입·등록	
* 개별소비세 70% 감면(최대 100만원)	
** 감면기간 : '20.1~6월(6개월간)	
ㅇ (추징* 면제)	ㅇ (추징 면제)
* 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	
+ 가산세(감면세액의 10%)	
- 신차 구입 후 사망, 천재지변, 폐차 절차	- (좌 동)
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	
못한 경우	
〈추 가〉	-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
	생산지연으로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
	이내에 신차를 구입·등록하지 못한 경우

<개정이유>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용차 생산 지연이 발생 하는 점 감안

<적용시기> '20.1.1. 이후 반출(수입신고)하는 분부터 적용

2020 · 04 · 01 www.taxpark.com **23**